

1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시행

문 의

충청북도	일자리정책과	(☎ 043-220-3352)
11개 시군	일자리담당부서	붙임 참조

❖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사업장 무급휴직근로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에 대한 생활안정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 코로나19로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 발령(2.23.)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고용보험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5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특고·프리랜서(고용보험미가입자)
-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특고, 일용직노동자 등

● 지원내용

- 생활안정 지원(무급휴직노동자, 노무 미제공 특고·프리랜서)
⇒ 월 50만원, 최대 2개월
- 단기일자리 제공(실직자)
⇒ 월180만원정도(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최대 3개월

● 신청접수

- 접수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방문, 이메일, 우편 등)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4월은 4. 10. ~ 4. 20.
※ 접수기간, 방법, 지급시기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공고문 또는 안내문 참고 요망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지원대상 및 요건, 중복신청 여부 등을 사전 확인한 후 시군별 지정된 접수처에 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목적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고 지역 주도의 일자리 안정을 위한 특별지원

□ 추진근거

- 「고용정책 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 「국가재정법」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원사업

-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 추진계획

- 사업기간 : 2020. 4월 ~ 9월 ※ 지원금 신청기한 2020. 8. 10.
※ 고용노동부 국비지원 사업으로 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총사업비 : 8,823,529천원(국비 85%, 지방비 15%)
- 수행방법 : 시군 직접수행 ※ 청주시는 청주시일자리종합지원센터
- 접수기간 : 매월 1일 ~ 10일 ※ 단, 4월은 4. 10. ~ 4. 20.
- 접수처 : 시군별 지정 접수처
- 접수방법 : 방문(또는 이메일 접수 등)
- 지급방법 : 본인 명의 계좌 입금 또는 지역사랑상품권 등
※ 접수기간, 방법, 지급시기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해당 시군 공고문 또는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세부사업내용

① 코로나19 피해사업장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 신청기간 : 2020. 4월 ~ 8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 다만 '20. 2. 23. ~ 3. 31. 해당분은 4. 20.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사업장 요건)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20. 2. 23.) 이후 영업일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하고 충청북도 소재의 50인 미만 사업장
(5인 미만 영세 소규모 사업장 우선 지원)
※ (제외업종) 단란주점업, 유흥주점업, 청소년 유해업소 등 30여개 업종(첨부 참조)
 - (근로자 요건) 무급휴직 실시 사업장에 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 단계('20. 2. 23.) 이전 고용보험이 가입된 근로자 중 무급휴직 대상자
※ (제외대상자)
 - ①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및 인척
 - ② 고소득자 : 소득 상위 10%(월 8,752,000원) 이상
 - ③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자
- 지원내용 : 무급휴직 5일 이상 근로자에게 월 50만원 지원(2개월)
- 신청방법 : 사업주가 신청(방문접수, 전자우편)
 - ※ 불가피한 경우 근로자 개별신청 가능
- 신청서류
 - ①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신청서
 - ② 무급휴직 확인서
 - ③ 사업자등록증(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④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 ⑤ 근로자 명의 통장 사본
 -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및 입증자료와 함께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 ⑧ 신청일 직전 3개월간(1월~3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무급휴직근로자 생계비 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앞담배 도매업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 ²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② 코로나19로 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사각지대 지원

- 신청기간 : 2020. 4월 ~ 8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매월 1일~말일까지 해당 분을 익월 10일까지 신청(월 단위 신청)
 - 다만 '20. 2. 23. ~ 3. 31. 해당분은 4. 20.까지 신청
- 지원대상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저소득자 우선지원)
 - 공고일부터 신청일까지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자
 - 신청일 전 3개월 동안 용역계약서, 위촉 서류, 소득금액증명원 등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자료로 특고·프리랜서임이 확인된 자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 '20.2.23. 이후 휴업 등의 사유로 5일 이상의 노무를 제공하지 못했거나, 코로나19 심각단계 격상 이전소득에 비해 25%이상 소득이 감소한 자
 - 중위소득 120%이하인 자(보건복지부 건강보험료 소득판정기준표, 2020년)

가구원수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2,109,000	70,702	29,273	
2인	3,590,000	120,068	107,954	121,451
3인	4,654,000	156,170	155,683	158,243
4인	5,699,000	192,080	199,256	195,200
5인	6,753,000	228,710	243,851	233,076
6인	7,808,000	260,770	281,687	268,311
7인	8,868,000	298,124	320,200	311,116
8인	9,928,000	343,406	368,522	368,580
9인	10,988,000	368,580	393,349	402,261
10인	12,048,000	402,261	426,790	437,059

※ 제외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 생계지원,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 지원금,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지원받는 자

< 특고·프리랜서 예시 >

- ☞ 산재보험 적용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중 9개 직종(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대출모집인, 신용카드 모집인, 대리운전기사, 택배, 퀵서비스기사)
- ☞ 교육관련(학습지 방문강사, 문화센터 강사, 스포츠 트레이너 등)
- ☞ 여가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원 등)
- ☞ 운송 관련(기타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원), 공항·항만 관련 하역종사자 등)

- 지원내용 : 월50만원(2개월)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전자우편
- 신청서류
 - ①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프리랜서 등 지원신청서
 - ② 특고·프리랜서 임을 입증할 서류 및 코로나19로 인해 일을 수행하지 못했음을 입증할 서류
 - ③ 고용보험 미가입 확인서류 : 고용보험자격이력내역서(근로자용)
 - ④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 ※ 주민등록상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모든 가구원의 납부확인서 제출
 - ⑤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 ※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지원금 대리수령 신청서 및 입증자료와 함께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명의 통장 사본 제출
 - ⑥ 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⑦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협약서

③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자(특고, 일용직 등) 단기 일자리 제공

- 신청기간 : 2020. 4월 ~ 8월(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
- 지원대상 : 코로나로 인한 실직자
 - ※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직1개월 이상인 자 우선
- 지원내용 : 시군별 실정에 맞는 일자리 제공(환경정비, 행정보조 등)
 - 월 180만원(최저임금 기준, 주 40시간), 최대 3개월
 - 주휴수당·유급휴가비 등 지원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신청서류
 - ① 단기일자리 제공 신청서
 - ② 개인정보처리동의서
 - ③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주의사항

- 본 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중인 생계비 지원사업, 고용노동부 고용유지지원금 등과 중복해서 받을 수 없으므로 신청하시기 전에 중복여부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시군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긴급복지생계지원, 유급휴가지원금, 고용유지지원금 등
- 지원대상과 요건은 충분히 숙지하시고 신청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통해 충분히 소명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 지급대상자 결정 및 지급 후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지원대상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또는 중복수급, 부정수혜의 경우 환수 조치 등 불이익 및 제재 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사업별 지원대상, 접수시기, 지급방법 등은 시군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시군에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군별 문의 및 접수처 >

접수기관(부서)	연락처	이메일
청주시 일자리지원과	201-1361~2	cjjob@hanmail.net
충주시 경제기업과	850-6030~3	mygumi2009@korea.kr
제천시 일자리경제과	641-6632~4	yinyun200@korea.kr
보은군 경제전략과	540-3536~9	kimpure@korea.kr
옥천군 경제과	730-3391~5	jungmiran@korea.kr
영동군 경제과	740-3731~6	nunsaram@korea.kr
증평군 경제과	835-4041~3	jphym002@korea.kr
진천군 일자리경제과	539-3481~4	seonyong@korea.kr
괴산군 경제과	830-3321~5	ckhe7511@korea.kr
음성군 경제과	871-3631~7	ilopkoo@korea.kr
단양군 지역경제과	420-2431~5	kht98@korea.kr